

부록 2-다-3

표 1

부속서 2-다 제3조가호2)목에 언급된 목록

대상	요건	상용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
충돌시 승객보호	정면	UN ECE 규정 94
	측면	UN ECE 규정 95
충돌시 조향핸들 후방이동	UN ECE 규정 12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제2호
조향장치 충격흡수	UN ECE 규정 12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제1항제1호
좌석 및 그 잠금장치	UN ECE 규정 17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
머리지지대 강도	UN ECE 규정 17, UN ECE 규정 25, GTR 7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99조
문열림방지장치	UN ECE 규정 11, GTR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제2항
계기판넬 충격흡수	UN ECE 규정 2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좌석 등받이 충격흡수	UN ECE 규정 2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
팔걸이 충격흡수	UN ECE 규정 2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햇빛가리개 충격흡수	UN ECE 규정 2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실내후사경 충격흡수	UN ECE 규정 46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
견인장치	77/389/EEC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호, 제2호, 제4호
후부안전판 강도	UN ECE 규정 58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 제96조

1) 대한민국 자동차안전기준

대상		요건	상용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
등화장치	설치기준	UN ECE 규정 48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전조등	UN ECE 규정 1, 2, 5, 8, 20, 31, 37, UN ECE 규정 98, 99, 112, 113, 12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48조제3항, 제106조제1호
	앞면안개등	UN ECE 규정 19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제1항, 제106조제2호
	후퇴등	UN ECE 규정 2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106조제3호
	차폭등	UN ECE 규정 7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06조제4호
	번호등	UN ECE 규정 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06조제5호
	후미등	UN ECE 규정 7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06조제6호
	제동등	UN ECE 규정 7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제106조제7호
	보조제동등	UN ECE 규정 7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제2항, 제3항, 제106조제8호
	방향지시등	UN ECE 규정 6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06조제9호
시계확보장치	보조방향지시등	UN ECE 규정 7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06조제10호
	뒷면안개등	UN ECE 규정 38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제2항, 제106조제2호
	후부 반사지 또는 반사판	UN ECE 규정 70, UN ECE 규정 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 제2항, 제107조
	운전자의 시계범위	UN ECE 규정 46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94조
	원동기 출력	UN ECE 규정 85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2호, 제111조
	창닦이기	78/318/EEC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제2항, 제109조제1호
	서리제거장치	78/317/EEC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제2호

대상	요건	상용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
안개제거장치 세정액분사장치	78/317/EEC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제3호
	78/318/EEC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9조제4호
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UN ECE 규정 13H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0조제1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UN ECE 규정 1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0조제2호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UN ECE 규정 1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0조제3호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 제외)의 제동능력	UN ECE 규정 1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0조제4호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UN ECE 규정 13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90조제5호
조향성능	UN ECE 규정 79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89조제2항
최고속도제한장치	UN ECE 규정 89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의2
속도계	UN ECE 규정 39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전자파 적합성	UN ECE 규정 10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
충돌시연료누출방지	UN ECE 규정 34, UN ECE 규정 94, UN ECE 규정 95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범퍼 충격흡수	UN ECE 규정 42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좌석안전띠 부착	UN ECE 규정 14, UN ECE 규정 16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103조제1항, 제2항, 제3항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UN ECE 규정 1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의2, 제103조의2
자동차의 경적소음, 배기소음, 소음방지장치	UN ECE 규정 28 UN ECE 규정 5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5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3륜이상 이륜자동차의 가속 주행 소음 제외)	UN ECE 규정 40, UN ECE 규정 41, UN ECE 규정 47 지침 2002/51/EC, 2003/77/EC, 97/24/EC 5장 및 9장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62조, 소음진동규제법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대상	요건		상응하는 대한민국 기술규정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OBD 포함)	3.5톤 미만 차량	UN ECE 규정 83, UN ECE 규정 24 규정(EC) 692/2008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시행규칙 제62조
	3.5톤 초과 차량	UN ECE 규정 49 규정(EC) 692/2008	
타이어	UN ECE 규정 30, 54, 75, 106, 117, 108, 10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제19조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Euro 6 OBD를 준수하는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대한민국 저 배출차량 및 초저배출차량 OBD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의 OBD 및 배출에 관한 경과조치

1. OBD

2013년 말까지, 또는 Euro 6 OBD의 도입이 더 빠른 경우 Euro 6 OBD의 도입 시까지,

가. 200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Euro OBD를 장착한 자동차의 판매가 800대를 초과한 유럽연합의 각 자동차 제작사는²⁾ Euro 5 OBD를 장착한 다음 대수의 자동차를 연도 및 브랜드별로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2010년: 1,200, 2011년: 1,500, 2012년: 1,800 그리고 2013년: 1,800

나. 2005년부터 2008년 동안 Euro OBD를 장착한 자동차의 총 판매가 연간 평균 750대를 초과한 유럽연합의 각 자동차 제작사는 Euro 5 OBD를 장착한 1천대의 자동차를 연도 및 브랜드별로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리고

다. 위의 가호 또는 나호의 적용대상이 아닌 그 밖의 유럽연합의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1,500대의 총 상한 내에서 Euro 5 OBD를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이 수량은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에 의하여 결정될 원칙에 따라 그러한 제작사 간에 분배될 것이다.

2. 배출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연간 10,000대 이하의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

2)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서명 시에 제작사의 개념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행은 이 항의 이행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차를 판매하는 제작사에 대해 새로운 조치³⁾가 적용될 때까지 대한민국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그 차량을 연간 250대 이하로 판매하는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판매된 그 제작사의 총 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의 연간 평균배출량이 0.047g/k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의 배출 요건을 준수한다.
- 나.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그 차량을 연간 4,000대 이하로 판매하는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판매된 그 제작사의 총 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의 연간 평균배출량이 0.039g/k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의 배출 요건을 준수한다. 그리고
- 다.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그 차량을 연간 10,000대 이하로 판매하는 제작사에 의하여 생산된 휘발유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판매된 그 제작사의 총 판매차량의 비메탄유기가스의 연간 평균배출량이 0.030g/k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의 배출 요건을 준수한다.

3. 경과조치의 적용⁴⁾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부터 OBD 및 배출에 관한 이러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도록 한다.

3)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에 따라 새로운 조치가 도입될 것임을 양해한다.

4) 이 협정이 2010년에 발효할 것이라는 상호 양해하에, 대한민국은 Euro 5 OBD를 장착한 자동차의 시판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이다.

표 2
부속서 2-다 제3조가호3)목에 언급된 목록

대상	대한민국 기술규정	상용하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 규정
최대안전경사각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107
최소회전반경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107
주행장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30, 54
조종장치 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121
차대 및 차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58, 73
연결장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제3호 및 제5호	55
도난방지장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18
승차장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107
운전자의 좌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107
승객좌석의 규격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107
좌석안전띠장치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	16
입석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	107
승강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107
비상구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107
통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107
창유리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43, GTR 6
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48

대상	대한민국 기술규정	상용하는 국제연합 유럽경제이사회 규정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39
소화설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36
주행장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75
제동장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	78, GTR 3
전조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5조	53, 56, 57, 72, 74, 76, 82
번호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50, 53
후미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	50, 53
제동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50, 53
방향지시등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50, 53
후부반사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3, 53
후사경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81
속도계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39